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및 드론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29일에서 2026년 7월 29일로 연장하며,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7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산림재난 안전의 전문적 대응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렬에 방재안전직렬을 추가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2명(9급 2명)과 통신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해방지교육과”를 “산림재난안전교육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방지교육과장”을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를 “물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유재산의 관리

제14조제2항 중 “산림재해안전과”를 “산림재난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재해안전과장”을 “산림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5”를 “64”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4”를 “4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4”를 “23”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3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9”를 “8”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8 다음에 “행정서기보·임업서

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6”을 “65”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9”를 “48”로 하고,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6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6”을 “25”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5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9”를 “8”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8 다음에 “행정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방송통신서기보 “11”을 “14”로 한다.

별표 6의2 중 방송통신서기보 “10”을 “13”으로 한다.

별표 7 중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2”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방송통신서기보 “10”을 “8”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명”을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으로, “2024년 7월 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7월 29일”을 “2026년 7월 2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7월 24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교육원) ① (생략)	제11조(산림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u>재해방지교육과</u> 를 두되, 교육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u>재해방지교육과</u> 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산림재난안전교육과</u> ----- ----- ----- ----- <u>산림재난안전교육과</u> 장-----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재해방지교육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산림재난안전교육과</u> 장-----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② (생략)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u>	4. <u>물품의 관리</u>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설>	13. <u>국유재산의 관리</u>

제14조(지방산림청) ① (생략)

②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산림재해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0호는 북부·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

1. ~ 10. (생략)

⑤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제14조(지방산림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림재난안전과-----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재난안전과장-----
-----.

--.

1. ~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으로 감원되는 정원 1명 (행정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u>6명</u>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 보 <u>4명</u> 및 행정주사보·임업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u>2</u> <u>024년 7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5년 7 월 29일까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 보 1명)은 <u>2024년 7월 29일까지</u> 각각 존속한다.	----- ----- ----- <u>4명</u>----- ----- ----- ----- -- <u>2명</u> ----- ----- <u>20</u> <u>27년 7월 31일</u>-----. ② ----- ----- ----- ----- ----- ----- ----- <u>2026년 7월 29일</u>-----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5</u>	<u>64</u>	-1
·	·	·	
·	·	·	
<u>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4</u>	<u>43</u>	-1
·	·	·	
<u>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24</u>	<u>23</u>	-1

<u>행정서기 · 임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9</u>	<u>8</u>	-1
<u>행정서기보 · 임업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6</u>	<u>65</u>	-1
·	·	·	
·	·	·	
<u>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9</u>	<u>48</u>	-1
·	·	·	
<u>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26</u>	<u>25</u>	-1
<u>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9</u>	<u>8</u>	-1
<u>행정서기보 · 임업서기보</u> <u>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3
·	·	·	
방송통신서기보	<u>11</u>	<u>14</u>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3
·	·	·	
방송통신서기보	<u>10</u>	<u>13</u>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방송통신서기보	· · <u>14</u>	· · <u>12</u>	-2
· · 통신운영서기보	· · <u>1</u>	· · <u>0</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10</u>		<u>8</u>	-2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1</u>		<u>0</u>	-1	
	·		·		·		
	·		·		·		